

●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공단 등의 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 전자우편 : djswpsk92@korea.kr

- 팩스: 044-862-80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044-202-89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공단 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23. ~ 11. 2.) 결과,

3) 행정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0. 특정활동(E-7)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제1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

무

별표 1 제1호의 적용 제외 법 규정란 중 “제31조”를 “제31조, 제31조의2”로 하고, 같은 란 제3호(종전의 제2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의 “사업”을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종전의 제3호는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종전의 제2호)의 적용 제외 법 규정란 중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를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1조의2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금융 및 보험업	
바. 전문서비스업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카. 농업	
타. 어업	
파.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하. 소매업; 자동차 제외	

거.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너. 녹음시설 운영업	
더.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러.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머. 임대업; 부동산 제외	
버. 연구개발업	
서.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저. 협회 및 단체	
쳐.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별표 1 제5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다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제30조 및 제31조의2는 제외한다),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

별표 35 제4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의2.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더의2.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한 안전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0	500	500

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 칭한 경우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제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0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u> <u>전보건교육 대상) 법 제31조의2</u> <u>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u> <u>말한다.</u>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u>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u> <u>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u> <u>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u> <u>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0.</u> <u>특정활동(E-7) 및 20의2. 계절</u> <u>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u> <u>하는 사람</u>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u>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u> <u>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u> <u>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u> <u>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u> <u>사람</u>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u>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u> <u>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u> <u>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u>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997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규정(안 제40조의2)

가. 제 · 개정 이유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 강화

나. 제 · 개정 내용

-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되는 14개 체류 자격 중 취업 가능 분야의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8개 체류자격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외국인근로자가 채용 전에 사전에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일하게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고유식별정보 취급 근거 추가(안 117조)

가. 제 · 개정 이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사무수행을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이수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 및 효율적인 이력 관리 도모

나. 제 ·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신설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무 추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교육 이수자 관리, 이수확인서 발급, 개인정보 정정 신청 등 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용자 불편 최소화 및 이수자 권익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안전보건교육 의무 확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규정 (안 별표 1)

가. 제·개정 이유

- 산업재해의 발생 유형과 원인이 다변화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재해 예방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의무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적용 제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35)

가. 제 · 개정 이유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나. 제 · 개정 내용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한 경우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부과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체계 강화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을 통한 시장 교란행위 및 불법영업을 차단하여 국가 인증 교육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적법한 교육기관의 권익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